

# 대학원 융합의과학 협동과정 운영 내규

제정 2018.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융합의과학협동과정” 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협동과정 학과 석.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융합의과학 협동과정 학과 소속 교수들은 융합의과학 협동과정학과 석.박사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융합의과학 협동과정은 다음 두 가지의 세부 전공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에 준한다.

### · 의과학 전공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의과학에 대하여 고전적인 기초의학의 바탕에서 최신의 연구동향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의학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전공분야이다.

### · 융합뇌과학 전공

본 전공에서는 기술문명 발달과 세계화 그리고 이와 동반한 생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뇌과학에 대하여 기초 뇌과학, 임상의학, 유전체 정보학, 심리학, 예방의학, 역학, 독성학 등의 학문의 융합을 통하여 뇌신경분야 전문 과학 연구인력 및 심리학 전문가, 임상 의사 등의 전문 직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융합 협동 연구를 수행하는 전공분야이다.

#### 제5조 (과목개설)

융합의과학 협동과정의 교과목 개설 및 폐지는 참여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제6조 (교·강사 배정)

융합의과학 협동과정 교과목의 교·강사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내 교수만 인정하며 필요에 따라 학과 참여 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제4장 논문지도

####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 ①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에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원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변경사항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5장 자격시험

####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 ① 석사과정은 SCI(E), Scopus급, Pubmed급 우수 학술지 주저자 자격요건을 취득하면 면제한다.
- ② 박사과정은 종합학력시험 시행 기준 online으로 등재된 주저자 논문이 SCI(E)급 학술지 분야별 상위 60% 이내 이거나 SCI Impact factor 2.5이상이면 면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종합학력 시험의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석사과정은 학과 수강 교과목 중 2개 과목에 대하여, 박사 과정은 학과 수강 교과목 중 4개 과목에 대하여 종합학력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며, 교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은 원칙적으로 학위논문으로 하지만 제 16조의 연구논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구논문으로 대체한다.

제12조 (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첨부 후 학과 운영위원회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자격시험 → 학위논문작성 → 예비심사 → 본심사

제14조 (예비발표)

학위논문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청구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 이 경우 재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그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석·박사 과정 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며,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SCI(E), Scopus급, Pubmed급 우수 학술지 주저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 석사학위논문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석사학위 대체논문의 경우 학과로 연구논문 제본분 (등재학술지 정보, 국문 초록 포함)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 카바 필요없음),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한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작업은 하지 않는다.

##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